

미복학제적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

학부(과)		학 번		학년		반	
성 명		연락처	☎ 본 인				
생년월일			☎ 보호자				
보호자주소							

제 적 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

※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0.12.2.일 이후 미복학제적자부터 적용

미복학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

(서명 또는 인)

※ 첨부서류 :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

※ 신청자란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
● **대리인 신청방법** : 가족만 가능하며,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

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귀하

【등록금반환】 ※담당자기재

학적구분	
등록일자	
등록금액	
장 학 금	
실납부액	
반환산정일	
반환기준	
대학귀속액	
반환금액	

- 미복학제적 당시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.
- 반환기준 산정일.
 - 휴학일 (납부한 학기와 상관없이 최종 재학 이후)
 - 제적일 (등록금을 납부하고 제적된 학기)
- 교육부령-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(개시(개강, 입학)일).
 - [별표] 등록금의 반환기준(제6조 제2항 관련)
- 대학귀속액 처리방법
 - 전액납부 : 실납부액의 반환기준 차감 산정액 (실납부액의 1/6, 1/3, 1/2, 전액)
 - 분할납부 : 분할납부할 전액의 반환기준 차감 산정액
- 반환금액 = 실납부액 - 대학귀속액
- 2~3주안에 신청한 본인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또는 장학재단에 상환 처리.

※ 정부지원장학금(장학재단, 보훈청 등) 반환 여부 확인